開化期의 文官服에 對한 硏究

金　美　子

目　次

Ⅰ. 머릿말
Ⅱ. 時代相과 文官服의 變遷
Ⅲ. 1895年에 制定된 文官服
A. 大禮服과 小禮服
B. 常服
Ⅳ. 大韓帝國時代의 文官服
A. 大禮服 1. 유럽諸國의 大禮服
2. 우리나라의 大禮服
B. 小禮服 1. 유럽 諸國의 frockcoat
2. 우리나라의 厚綿高套
3. 유럽 諸國의 morning coat
4. 우리나라의 燕尾服
C. 常　服 1. 유럽 諸國의 平服
2. 우리나라의 常服
Ⅴ. 맺음말
참고문헌

Ⅰ. 머 릿 말

開化期는 服飾의 변화도 많았고 遺物도 많지만 硏究는 많지 않기에 開化期 文官服에 관해 考察하고자 하며 硏究 범위는 高宗朝(1864~1910)의 時代相과 高宗 21년부터 20여년간의 文官服의 변화과정과 1895년 頒布된 文官服의 構成 및 1900년 제정된 歐美式 文官服의 構成을 考察하겠다. 遺物의 주요출처는 梨花女子大學校家政大學과 建國大學校博物館 및 수도博物館이다.

Ⅱ. 時代相과 文官服의 變遷

우리나라의 開化는 1876년 日本과 丙子修好條約을 맺음으로써 시작되었는데 이 開化의 싹은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중엽에 전성을 이루었던 實學이 밑거름이 되었다. 1870년대의 지식인들과 爲政者는 해외사정을 알아야 된다는 開國과 같은 槪念을 갖고 있었으며 1880년대는 開化思想의 開花期로 貴賤 구별없이 학교 입학을 허락했고 병원 郵政局의 設立 등 외국 先進文化를 수입하여 나라의 富强을 이루어 보겠다는 사상이 성급하게 甲申政變(1884)을 일으켜서 실패했다. 이때 服飾의 개혁도 있었는데 충분한 說得이 없었기 때문에 納得을 못한 많은 儒林과 백성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쳤으나 청년들의 開化思想에 동조했던 高宗은 黑團領(色衣)착용 및 廣袖 폐지를 고집했다. 그러나 잘 시행되지 않아 10년 후 다시 시도되었다. 東學亂 淸日전쟁 甲午更張 乙未事變 俄館播遷 露日전쟁 등 중대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마침내 乙巳條約이 맺어졌고 1910년에는 韓日合併이라는 民族의 비극이 초래되었다.

文官服의 變遷

經國大典과 大典會通에 의하면 朝鮮王朝 文武百官服에는 祭服 朝服 公服 常服이 있었다. "朝服, 祭服은 先聖의 遺制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었으나[1] 常服에는 高宗 21년 5월에 甲申衣服改革이 있었은즉 "堂上의 時服인 紅團領을 입지

1) 高宗實錄 卷 21(서울, 探求堂, 1970 영인본) 고종 21년 5月 46面.

말며 官服은 간편하게 전부 黑團領으로 하되 胸褙를 加해서 大小朝儀進見 및 闕內外公故에 착용토록 했고 國初의 制樣을 따라 盤領 窄袖로 하라[2]고 했다. 또한 "私服도 廣袖인 道袍 直領 氅衣 中衣를 除하고 窄袖인 周衣를 입으라고 했으니 뿌리깊은 因習과 傳統의 國民에게 납득이 안 가는 것이어서 崔益鉉을 비롯한 많은 儒林이 衣服改革 反對 上疏를 올렸으니 잘 시행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10년 후 甲午更張 때 다시 簡素化가 시도 되었은즉 陛見時 公服은 紗帽에 章服인데 깃은 盤領이고 소매는 窄袖이며 品帶와 靴子(木靴)를 착용하라 했고 서울과 地方이 같게 하기 위해 급히 行會하도록 軍國機務處에서 議案을 올렸다.[3]

12월에는 官服이 더욱 간이화되어 "朝臣의 大禮服은 黑團領을 입게 하고 進宮 通常禮服으로 黑色周衣와 褡護를 입고 紗帽 靴子를 착용토록 했다.[4]

私服으로 周衣를 착용토록 했을 때 굉장한 반대를 했었던 10년 전에 비해 進宮 通常禮服으로 昇格했으니 큰 변화였지만 국민 자신의 견문이 납득할 수 있었기에 周衣를 입어 부끄러워 하지 않았으니 衣服改革에 상당한 효과를 본 것이다. 이듬해 高宗 32년 3月에는 "公私 禮服中 褡護는 입지 말고 進宮 때에만 帽 靴 絲帶를 사용하고 周衣는 官民이 다같이 黑色으로 하라 하며 그 이유를 內部告示로 밝힌 즉 王이 官民이 一體로 黑色의 周衣를 입으라함은 첫째로 衣制上으로라도 官民을 一視하사 區別하지 않음이요, 두째는 便宜를 위해서라 했다.[5]

官과 民이 같은색 같은 형태의 옷을 입은 것은 朝鮮王朝史上 찾을 수 없었던 일이며 高宗 및 開化派의 평등사상이 服飾에 表現된 것이다.

高宗 32년 4月 8日에 勅令 第78號로 陸軍服裝規則이 制定 되자 胸背로써 文·武官을 구별하던 官服에 製式의 차이가 있게 되었다. 동년 8月 10日에는 文官의 服裝式이 頒布 되었은즉

一, 朝服 祭服은 舊例대로 착용하고
一, 大禮服은 黑團領 紗帽 品帶 靴子로 動駕 慶節 問安 禮接 時에 착용하고
一, 小禮服은 黑盤領 窄袖袍 紗帽 束帶 靴子로 進見時에 착용하고 혹 大禮服 때에 착용하여도 좋으며
一, 通常服色은 周衣 褡護 絲帶로 內外官 仕進時는 꺼리낌이 없으나 進見時에는 착용하지 말라고 하였다.[6]

1895년에 반포된 文官服과 大典會通을 비교하면

① 公服이란 단어가 없어지고 大禮服 小禮服이란 단어가 생겼고

② 官服하면 團領服인 常服을 의미 했었으나 常服이 周衣와 褡護로 되어 常服 차림으로는 進見할 수 없게 되었으니 常服이란 單語의 槪念이 달라졌다.

③ 公服에 착용토록 제정되었으나 儀式外에는 착용하지 않던 幞頭가 없어졌고

④ 團領의 色은 紅, 靑, 綠色이 黑色으로 되었고

⑤ 소매넓이로 大禮服 小禮服을 구별하게 됐으며

⑥ 신은 黑皮靴 挾金靴가 木靴로 되었다.

同年 11月에 一, 國服이 몸에 있으니 衣服은

---

2) 바로 앞책 고종 21년 5月 45面.
敎曰 官服之專用 黑團領乃古制也 事甚簡便 而堂上之時服紅團領 依通編原典例勿用自今爲始 凡係朝籍人 常着黑團領 每於大小朝儀進見及闕內外公故 加着胷褡 以爲文武階品之別 團領制度之盤領窄袖 亦一遵國初制樣.

3) ① 高宗實錄 卷 31, 고종 31년 6月, 44面.
② 大韓季年史(국사편찬위원회, 1957) p.91.
③ 日省錄 高宗篇 31(서울大學校 古典業書, 영인본. 1971) p.200
④ 黃玹 梅泉野錄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55) p.155.
⑤ 高宗時代史 卷 3(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69) 고종 31年 8月 12日.
一, 朝官衣制 陛見公服 紗帽 章服 盤領窄袖 品帶 靴子 燕居私服 漆笠 褡護絲帶 士庶人 漆笠 周衣 絲帶 兵弁衣 制遵近例 將卒不宜異同事.

4) 高宗實錄 卷 32, 고종 31年 12月, 70面.

5) 高宗時代史 卷 3 고종 32년 8月 6日.

6) ① 大韓季年史 上, p.111.
② 高宗實錄 卷 33 高宗 32년 8月 71面.
③ 承政院日記 高宗 13(국사편찬위원회, 1968, 영인본) p.226.
④ 舊韓國 官報 卷 2, 下(서울, 아세아문화사. 1973, 영인본) p.1163.

옛과 같이 白色을 쓰고

一, 망건은 폐지하며

一, 外國衣服인 洋服을 입어도 좋다[7]고 했고 단발령이 내려졌다.

2달 후에 "冠의 모양은 外國 것을 모방하되 材料는 國産을 사용하고 衣服도 모양은 外國 것이되 紬, 綿, 布, 苧를 사용하고 履는 舊制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8]

斷髮令은 國母가 日本人 暴徒에게 弑害된 참극이 있은지 얼마되지않어 大闕 內에서부터 시작되어 强行되었기 때문에 도처에서 무서운 反撥과 民族分裂의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반면 獨立新聞은 "머리 깍고 양복 입는 것은 기둥도 세우기 전 장판부터 놓는 격으로 先後는 바뀌었으나 언제든지 할 일이며 백성에게 편리한 일인 즉 정부에서 억지로 시키지 말고 백성에게 맡기도록 하라고[9] 주장하였고 나라에서 1895년 外交官 通譯官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관립 외국어 학교 학생들은 단발령에 호응하여 머리 깍고 洋服 입고 학교에 다녔으니 이는 新舊의 대립이 服飾에 나타난 것이었다.

建陽 2년(1897, 고종 재위 34年) 年號를 光武로 고치고 國號를 大韓帝國이라 하고 10月에 高宗이 皇帝位에 오르자 獨立國家를 이루어 中國 皇帝와 同格인 12旒冕 12章服을 착용하고 色도 黃色을 사용하였는데 이에따른 文官服의 변화는 없었다.

1898年 6月에 "勅令 제20호로 各國에 駐在하는 外交官 이하 官員 服裝式을 頒布했는데[10] 大禮服 小禮服 常服 3종으로 國內 文官服과 같았으며

光武 3年 8月에는 "出疆한 使臣의 服飾을 外國 規模를 참작하여 改正하도록 함으로써 外交官의 服裝이 洋服으로 되었고 國內의 文官은 小禮服 즉 窄袖인 黑團領에 品帶만 더 꾸며 大禮服으로 입도록 했다[11] 光武 4년(1900) 4月 17日 "勅令 14號로 文官服裝規則을 정했고 제15號로 文官 大禮服 製式을 정했으며 제13號로 勳章規則을 정하여 洋服을 착용[12]하니 新羅 28대 眞德女王 이래 朝鮮 開國 509년 까지 착용 해온 中國式 官服이 歐美式 官服으로 바뀌었다.

1900년에 頒布된 文官服은 大禮服 小禮服 常服 3종인데 大禮服은 英國의 宮中禮服을 모방한 日本의 大禮服을 참작한 것이고 小禮服인 燕尾服과 厚錄高套(frock coat)는 유럽 諸國에서 사용되던 市民의 禮服이었고 常服인 세비로(美國各 sack coat)는 歐美에서 착용되던 市民의 平服이었다.

Ⅲ. 1895년에 頒布된 文官服

高宗 32년(1895) 8月 10日 頒布된 文官服에는 大禮服 小禮服 常服 3種으로 光武 4년(1900)까지 짧은동안 着用되었다. 國初부터 制樣에는 변함이 없었고 옷깃 파임의 大, 小와 옷고름의 등장 및 色과 소매넓이의 변화 등이니 朝鮮王朝 百官의 常服의 製式을 미루어 생각할 수 있겠다.

× ×

A. 大禮服과 小禮服

大禮服은 動賀 慶節 問安 禮接 時에 着用하며 紗帽 黑團領 中單 品帶 胸背 靴子 襪로 構成된다.

小禮服은 進見 時에는 아무때나 착용하고 혹

7) ① 日省錄 고종편 32, p.275.
② 大韓季年史 上, p.134.
③ 고종록 권 33, 고종 32년 11月 33面
8) 法規類編 二 規制門第十類 衣制 305~311(규장각본).
9) 獨立新聞 卷 1 (서울, 中央文化출판사, 1969 縮刷影印本) 22호 建陽 元年 5月 24日.
10) ① 高宗時代史 卷四, p.597.
② 高宗實錄 광무 2년 6月, 34面.
③ 官報 卷 5, p.363.
11) ① 高宗時代史 光武三年 8月 3日(木).
② 官報 卷 6, p.574.
③ 日省錄 고종편 36, p.187.
④ 承政院日記 高宗 14, p.56 광무 3년 6月 27日.
12) 法規類編 二 衣制 305~311.

大禮服 時에 착용해도 되고 構成은 大禮服과 같고 단지 黑團領의 소매넓이가 大禮服보다 좁은 窄袖인 것만이 다르다.

1. 紗 帽

紗帽는 朝鮮 "太宗 18년 1月부터 百官이 처음 착용하기 시작해서[13] 1900년 文官服이 洋服으로 되어 歐美式의 帽子를 사용 할 때까지 有官者가 가장 많이 착용한 禮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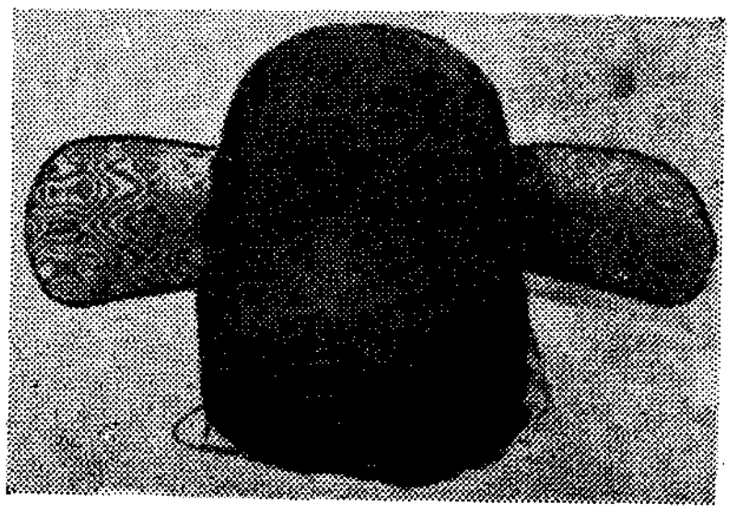

<圖 1. 紗帽, 嶺南大學校所藏>

가. 材料와 形態

紗帽는 烏紗帽라고도 하며 國喪中에는 白紗帽를 사용하였다. 부분 명칭은 帽頂과 脚(角)이 있고 軟脚과 硬脚으로 區分된다. 재료는 원래 미상인데 嶺南大學校 소장품은 竹紗와 말총으로 짜고 黑漆을 하여 그 위에 가는 비달실로 짠 紗布를 씌웠다.(圖 1)

紗帽의 근본재료는 비단(紗布)인 것 같고 그 兩翼角部 곧 軟脚은 비단 끈으로 되었던 모양이고 硬脚은 「芝峰類說」에 의하면 대나무(竹)와 鐵絲로 빳빳하게 하였다고 한바 대나무 또는 철사로 脚部의 輪廓을 잡고 공간은 비단으로 채웠던 것 같다.[14]

나. 實 物

"嶺南大學校 博物館 소장품(圖 1)은 淸道郡 韓彰愚씨가 기증한 것으로 韓氏 家門의 世傳之物이다. 帽部 兩翼角部가 完存하는 것으로 말총으로 짜고 紗布를 덮고 黑漆을 하였다.

後高部의 높이 18.2cm 翼角部 長 15.5cm 前底部의 높이 11.2cm 底邊 長 16.2cm로 그 수치와 形態는 朝鮮王朝 末期의 典型的인 樣式의 紗帽[15]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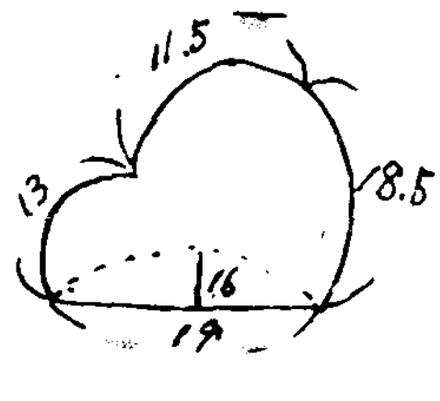

<圖 2 사모 실측도>

실물 ②는 建國大學校 博物館 所藏品으로 朝鮮末期 것으로(圖 2 참조) 後高部의 높이 18.5cm 前底部의 높이 11.5cm 底邊 長 13cm 翼角部 가로 15cm 세로 8cm였다.

실물 ③은 昌德宮 所藏品인데 朝鮮末期 宮中用으로 高 17.5cm 직경 17cm의 것이다.

2. 黑 團 領

團領이란 깃이 둥글다는 의미이며 "團領服을 官服 또는 冠帶라고도 한다.[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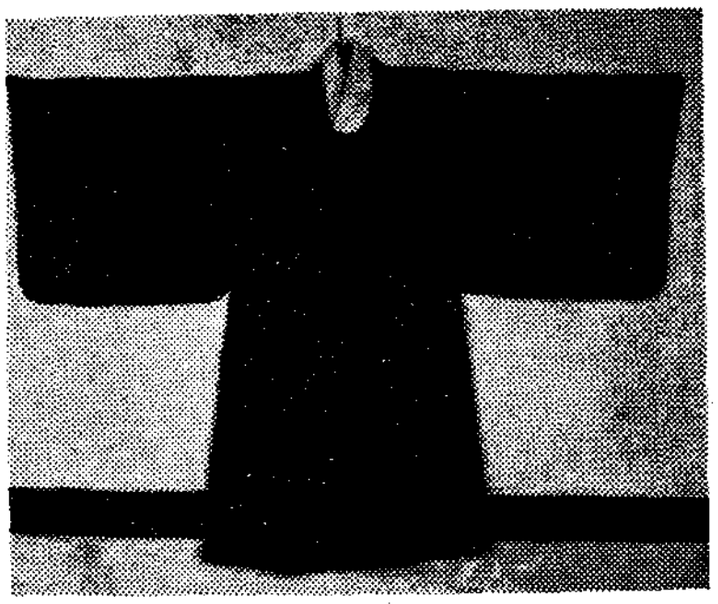

<圖 3 黑團領, 이대가정대소장>

「韓國名人肖像大鑑」을 보면 朝服 祭服을 除外한 官服은 團領이었다. "經國大典에 의하면 品職있는 이의 公服은 袍로 되어있지만 團領을 의미하는 것이고 色은 一.二品과 正三品은 紅, 從三品과 4.5.6品은 靑 七.八.九品은 綠이다. 그러나 朝臣의 服色이 반드시 定制대로 되지 않어 諸色이 雜用되었고 成宗朝에 鴉靑 草綠 木紅 3色을 定했으되 이 또한 恪遵되지 못하고 언제부턴지 淺淡紅色을 習用하더니 宣朝 壬亂후에 君臣 同色임을 避하여 朝官은 黑團領을 服케 하였으나

13) 金東旭, 韓國服飾史硏究(서울, 아세아문화사 1973) p.382.
14) 韓國의 冠帽(경북, 영남대학교, 1972) p.41.
15) 바로 앞책 p.87.
16) 崔南善, 朝鮮常識 風俗편 衣服類 p.122.

舊習에 젖어 이내도록 紅色을 從하고 英祖 丁丑에 堂下官의 靑綠袍制를 勵行하여 紅袍는 차차 減少를 보았다[17]고 했는데 紅色이 계속 사용되었던지 高宗 21년에 "堂上의 時服인 紅團領을 입지 말고 古制에 의해 官服은 오로지 黑團領을 입으라 했고 朝儀進見 및 闕內外 公故에는 黑團領에 胷背를 加하여 착용하고 團領의 制度는 盤領 窄袖로 하되 國初의 制樣에 遵하도록 했다.[18]

그러나 잘 시행되지 않아 10년후(1894) 다시 窄袖領이 내려졌는데 워낙 넓은 소매에 대한 착수령인지라 窄袖라 하더라도 역시 넓은 소매였다.

나. 實 物

實物은 京畿道 始興郡 鄭忠模氏 所藏品인 鄭元容(正祖 1783~高宗 1819때 名宰相)의 ·북청색 常服[19]과 梨花女大 家政大 소장품인 官服 4領과 建國大學 博物館 소장품인 官服 4領과 昌德官 소장품 小禮服 9領 合 18領이었다. 實錄에 1894년 12月부터 大禮服이란 用語가 있었으나 1895년 8月의 文官服 制定 時期를 기준으로 하여 1895년 이전의 官服을 常服으로 보았다.

色과 소매넓이로 常服 大禮服 小禮服이 區別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官服 17着을 實測(표 1)하여 소매넓이를 추출해 보았다. 常服의 기준은 鄭元容의 常服과 이대소장 武官의 常服으로해서 소매넓이 50~59cm의 것을 常服으로 보았고 大禮服의 기준은 建國大學 소장 黑團領과 18년 전 운현궁 제작품인 이화女大 소장품으로해서 소매넓이 40~48cm의 것을 大禮服으로 보았으며 小禮服의 기준은 운현궁 제작품과 昌德宮 소장품인데 소매넓이 23.5~32cm였다.

그러나 色과 소매넓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으니 昌德宮 소장품인 27~30cm의 窄袖인 官服은 小禮服임이 분명하나 色은 유록색이었으며 建大 소장품으로 色은 북청색이었지만 소매넓이는 42cm였으니 大禮服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色 사용이 紊亂하였던가 혹은 有官者였던 사람은 벼슬길을 떠났어도 과거의 品職대로 불리우며

<圖 4 소례복 창덕궁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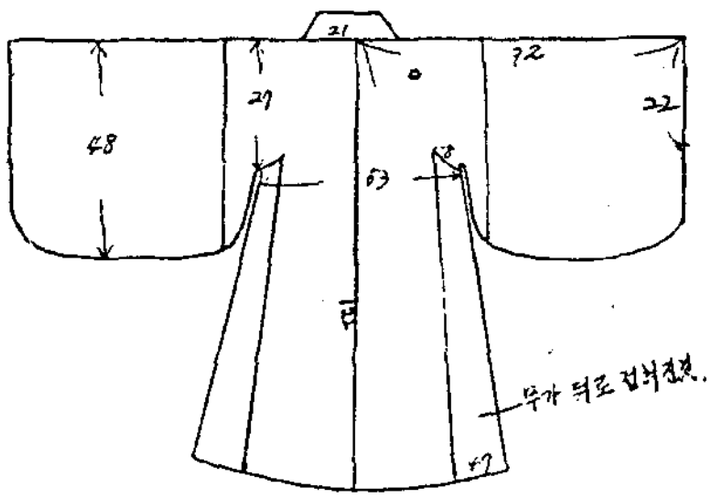

<圖 5 黑團領後 건대소장>

官服을 終身할때 까지 입을 권리가 있었으므로[20] 후에 만들었으되 소매넓이는 時俗대로 하고 色은 과거의 官服色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盤領과 團領의 차이는 없었는데(圖 3.4 참조) 나라의 命에 따르지 않고 시속대로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朝鮮王朝 初期의 官服깃을 보면 개화기의 官服깃보다 훨씬 덜 파져 있다. 이것으로 보아 盤領과 團領의 차이는 둥근깃의 파임의 차이인듯 하다.

3. 中 單

中單은 中衣라고도 하며 白色이다. "上代에는 深衣라는 것이 있어 이것을 祭服 朝服의 안에도 입었는데 이 深衣는 卿大夫에게는 가장 중요한 衣服이었고 上衣와 下裳이 連續된 것이었다. 이것이 唐代에 이르러 中衣일 경우 허리를 꿰메지 않고 밑의 폭을 가르지 않어 中單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21] 고종 21년 廣袖 폐지령에 의해 中衣는 차츰 없어지고 대신 주의(周衣)를 입었으리라 추측한다.

17) 바로 앞책 p.123.
18) 高宗實錄 卷 21, 고종 21년 5月, 46面.
19) 重要民俗資料解說(文化財管理局 1973) p.50.
20) 今村鞆 朝鮮風俗集(京城 1914) p.122~123.
21) 柳喜卿 "冕服에 관한 硏究"(이화여대박사학위청구논문 1973년) p.262.

(표 1) 官 服(團領) 實 測 表

단위 cm

材料및色	所藏處	길이	품	진동	소매넓이	화장	수구	겉섶 上	겉섶 下	안섶 上	안섶 下	고대	단령 길이	단령 넓이	무 上	무 下	단령안깃넓이	고름2개 길이	고름2개 넓이	각며고리 넓이	각며고리 길이
겉:북청색운문사 안:남색운문사	정원용(常服)	115	47	27	53	93	27		42		23	18	23	4	10	47	10	83	8	2	22
겉:북청색생수 안:청색갑사	梨大(常服)	133	53	30	56	93	23	11	52	12	43	20	23	4.5	10	55	10	90	9	3	24
겉:유록사(紗) 안:청색사	운현궁제작(〃)	125	58	32	59	90	25	14	26	9	20	22	25	5	11	38	9	105	8.5	2	30
겉:북청색사 안:청색사	建大(〃)	123	46	31	50	87	23	11	51	14	45	18	28	4.7	11	51	10	86	8	2	17
겉:黑紫色사 안:청색사	〃	130	50	33	50	92	26	15	40	14	35	18	27	5	10	45	11	80	8.5	2	17
겉:黑色사 안:청색사	建大(흑단령)	122	53	32	48	92	22	10	32	4	21	21	27	4.8	8	41	10	77	8.5	2	23
겉:유록색사 안:청색사	梨大(운현궁 제작 大禮服)	121.5	57	30	40	82.5	24	14	24	13	22	21	25	4.5	11	34	10	111	8	2	16
겉:운문사(북청색) 안:청색운문사	建大(大禮服)	123	47	30	42	93	20	12	47	10	40	20	27	5	11	51	9.5	85	8	2	20
겉:유록사 안:청색사	운현궁 제작 梨大(小禮服)	125	58.5	31	32	82	28	15	26	10	19	22	27	5	10	34	10	111	9	2	16

(표 2) 小 禮 服 實 測 表

단위 cm

유물번호	재료및색	소장처	길이	품	진동	수구(소매넓이)	화장	겉섶 上	겉섶 下	안섶 上	안섶 下	고대	단령 길이	단령 넓이	무 上	무 下	단령안깃넓이	겉고름 길이	겉고름 넓이	안고름 넓이	안고름 길이
2 6 3 6—1	겉 : 검은 쑥색 紗 안 : 황 색 紗	창 덕 궁	117	52	26	25	74	14	20	7.5	18	17		5	8.5	27		88 79	7	5	47
2 6 3 6—2	〃	〃	120	53	27.5	23.5	76	12.5	21	6.5	19	20		5	8.5	30		100 80	8	5	52
2 6 3 7—1	〃	〃	116	51	26	25	76	11.5	21	6.5	16	21		5	8.5	30		93 68	8	6	56
2 6 3 7—2	〃	〃	126	54	28	26	77.5	13.5	19	7.5	17.5	21		5	8.5	32		95 79	9	4	46
2 6 3 7—3	〃	〃	119	54	28	24.5	78	12	18	8	18	18		5	8.5	31		95 78	8	5	43
2 6 3 7—4	〃	〃	113	56	26	25	73	13.5	19	8	17	21		5	9	30		105 88	8	4	48
2 6 3 7—5	〃	〃	121	50	23	24	78	12	20	7	18	19		5.5	8	31		108 93	8	6	59
2 6 3 7—6	〃	〃	117	55	28	26	78	12.5	22	9	18	23		5	10	30		97 78	7.5	7	59
2 6 3 7—7	〃	〃	120	53	27	25	75	12.5	19	8	17	22		5	9.5	30		96 86	8	4	48

4. 胸 背

文武官의 區別과 品位의 等差를 표시하는 흉배는 "端宗 2년(1454) 12月에 제정되었고 常服에만 달았다. 英祖 22년(1746)에 완성된 續大典에서 堂上官 이상은 雲鶴이고(圖 6) 堂下官은 白(圖 7)으로 개정[22]되어 고종 융희 2년(1908) 완성된 文獻備考에까지 그대로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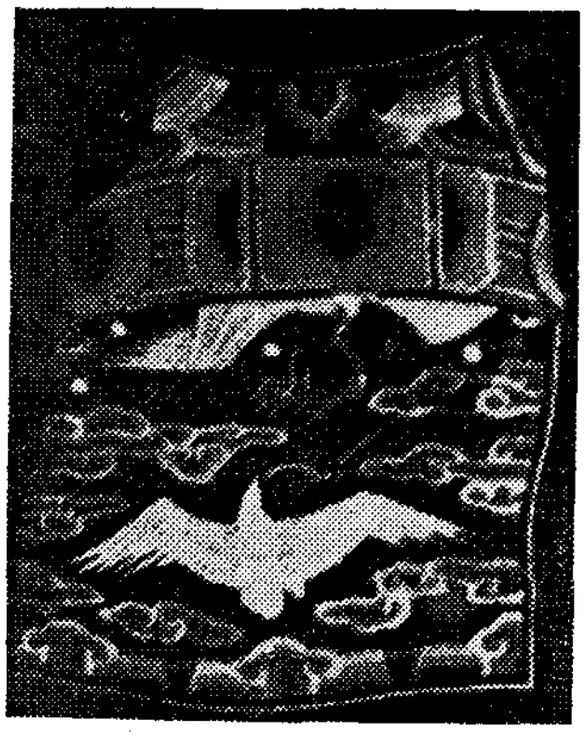
<圖 6 雲鶴 한국명인초상대감>

鶴胸背의 實物은 세로 18cm 가로 15cm의 작은 것(昌德宮 소장)에서부터 세로 30cm 가로 29cm의 큰 것에(高大博物館 소장) 이르기까지 수십종이 있었는데 시대에 따라 크기의 변화가 있었는지 착용자의 체구에 따른 것인지 연구해 볼 과제이다.

5. 帶

계급의 等差를 나타내는 帶는 經國大典의 제도가 大典會通에서 보충되었다. 高宗 21년 이후 관복의 변화에 따른 帶에 대한 언급이 없어 1900년까지 大典會通대로 사용됐다고 보겠다.

즉 一品은 犀帶, 正二品은 鈒金帶, 從二品은 素金帶, 正三品은 鈒銀帶, 從三·四品은 素銀帶, 五品부터 九品까지는 黑角帶이다.

實物은 高大博物館에(圖 8.9) 翡翠帶, 玉帶, 犀帶, 金帶, 銀帶, 烏角帶, 布品帶, 鶴頂帶가 있고 수도박물관에 玉帶, 金帶, 鈒金帶, 角帶, 玳瑁麒麟帶, 白澤帶, 昌德宮에 純宗이 착용했던

<圖 7 白鸛 한국명인초상대감>

玉帶와 犀帶, 白角帶, 角帶, 建大박물관에 角帶가 있었는데 이중 6개를 實測했다.(表 3) 넓이 3.5~5cm 길이 109~120cm로 일정치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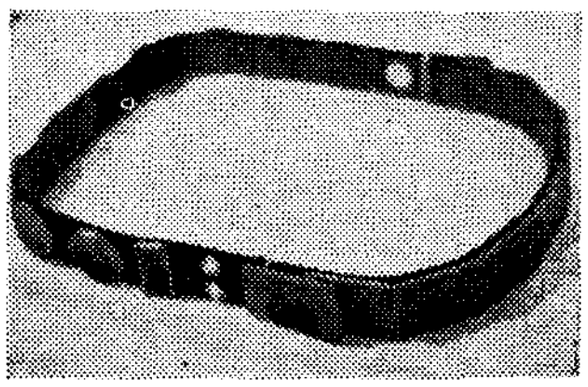
<圖 8 犀帶 고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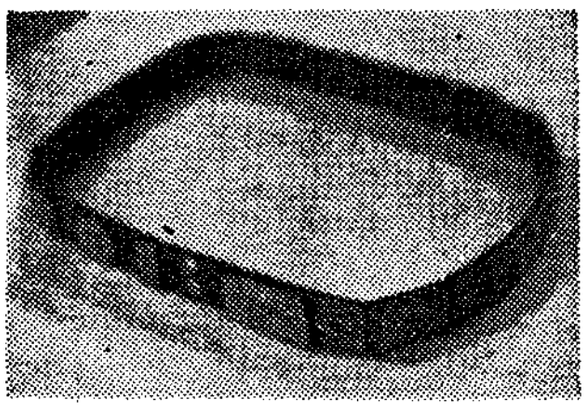
<圖 9 鈒金帶 고려대소장>

(表 3) **帶의 實測** 단위 cm

帶의 종류	넓 이	길 이	所 藏 處
鶴 頂 帶	5	120	高大博物館
鶴 頂 帶	4	113	梨大家政大
玉 帶	4.7	109	昌德宮
角 帶	4.5	122	〃
白 角 帶		118	〃
角 帶	3.8	120	建大博物館

<圖 10 金弘集의 常服차림>

6. 木靴, 襪

襪은 버선이며 白色이다.

靴는 "經國大典과 大典會通의 제도가 같으니 堂上官 이상이 挾金靴를 착용토록 했다.[23]

高宗 31년 大禮服 및 進官 通常禮服으로 靴子를 착용하라 했는데 靴子는 木靴를 말하며 이미 이전부터 木靴가 착용됐음을 1880년 日本에 수신사로 갔었던 金弘集의 사진(도 10)으로 알 수 있다.

실물인 昌德宮 소장품의 것은(도 11) 바닥은 나무이고 신목은 검은 우단 같은데 솔기는 가는 灰色 가죽선 3줄을 쳤고 신목 위단은 1cm 내외의 白色 형겊

22) 李康七 "文武官胸背 制度에 대하여" 月刊文化財 제 3권 제 7호 別冊.
23) 朴秀子 "우리나라 신의 변천에 대한 연구"(이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1963)

이었다. 신목 윗 단의 넓이는 0.7cm~7cm이었는데 계급에 따른 것인지 착용자의 기호에 따른 것인지 잘 알수 없었다. 각 박물관에 많이 소장되어 있었다.

<圖11 木靴 昌德宮소장> 朝鮮朝의 百官服이 制定된 이래로 常服은 紗帽 團領에 胸背(端宗 2年 12月 이후 착용) 品帶였었는데 高宗 31년 12月 朝臣의 進宮 通常禮服으로 周衣 褡護 紗帽 靴子를 착용하게 함으로써[24] 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

高宗 32년(1895) 3月에는 進宮時에만 帽 靴 絲帶 黑色 周衣를 입게 하였고 8月에 制定된 文官服裝式에서는 通常服色은 便에 따라 周衣 褡護 絲帶를 착용하되 內外官 仕進時는 꺼리낌이 없으나 進見時에는 不着하라 했다.

<圖 12 閔泳翊의 常服차림> 1895년 8月에 制定된 文官服에는 周衣 褡護 絲帶이며 冠과 신에 對한 언급은 없다. 여기의 冠은 紗帽나 漆笠일 것인바 고종 31년(1894) 12月과 고종 32년 3月에 頒布된 官服에는 大禮服과 常服 二種이 있어 常服으로 進宮할 수도 있었기에 常服에 紗帽 木靴를 착용하도록 했으나 高宗 32년 8月에는 大禮服 小禮服 常服 3種으로 되어 小禮服으로는 進見할 수 있어도 常服으로는 進見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冠은 당시 백정에게까지 쓰게 했던 國帽나 다름없는 漆笠으로 신은 木靴로 추정하는데 周衣 褡護 木靴 漆笠을 착용한 閔泳翊의 사진(도 12)과 韓國現代史 試鍊에선 王朝 p. 430에 있는 사진을 근거로 했다.

B. 常 服

1. 漆笠(黑笠)

笠은 太宗 18년 1월 1일 百官이 朝路에 紗帽를 착용할 때부터 文武百官의 便服에 착용되었고 차츰 착용범위가 넓어져 士庶人도 外出 祭祀 기타 衣冠을 갖추어야 될 때 널리 사용되었으며 고종 32년 8月에는 文官의 常服에 착용하는 禮冠이 되었다.

단발령이 내려 망건이 폐지되자 網巾에 갓을 쓰던 것이 宕巾에 갓을 쓰게 되었고 건양 원년(1896) 2月에는 "白丁에게까지 漆笠을 쓰는 것을 허락했으니[25] 貧富 貴賤없이 다 쓰는 國帽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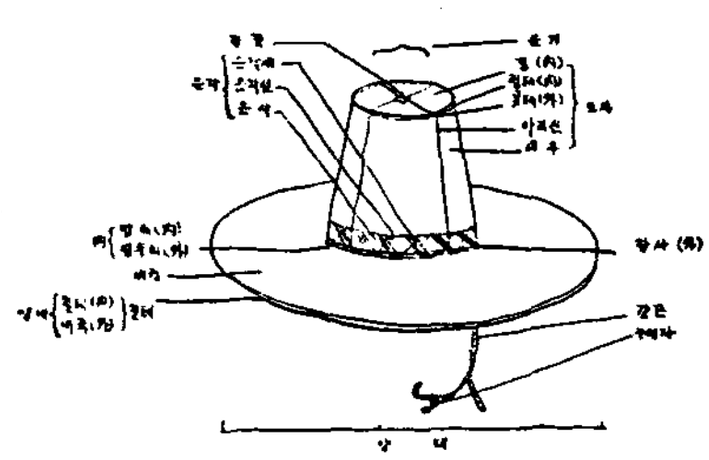

<圖 13 黑笠의 각부분 명칭>

가. 形 態

갓의 기본형태는 양태에 모자를 달았고 양태는 버렁을 약간 曲線을 이루도록 짰으며 모자는 원통형이나 上으로 올라가며 줄어들고 帽頂이 평평하다(도 13 참조) 형태의 변화는 笠의 帽子의 高低 양태의 大小등으로 복잡했었다.

高宗이 王位에 올라 大院君이 집권하자 양태(凉太)가 넓은 통냥갓(大笠)을 凉臺가 좁은 작은 갓(小笠)으로 개량하였고 긴 갓끈도 짧게하였고 옷의 넓은 소매도 좁은 소매로 고치게 했으나[26] 잘 시행되지 않았다.

나. 材料와 種類

"漆笠의 기본재료는 竹絲이며 여기에 촉사 모수 먹 부레풀 창호지 말총 쇠꼬리털 등이 첨가되어 옷칠 한 것이다. 종류에는 眞絲笠 陰陽絲笠 陰陽笠 布笠 馬尾笠 猪毛笠 등이 있다.

---

24) 高宗實錄 卷 32, 고종 31년 12월, 70面.
25) 黃玹 梅泉野錄(국사편찬위원회 1971, 영인본) p. 193.
26) 李瑄根 韓國史(最近世編, 서울진단학회 1961) p. 221.

眞絲笠은 極上品인데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竹絲로만 4겹으로 엮고 中國産 촉사를 한올 한올 입혀서 옷칠하고 모자도 총모자가 아닌 대모자를 쓴 것이다. 唐絲를 물들여 은각 밑뿌리 징 밑에 감았는데 紅絲는 王이 쓰는 御笠이고 靑絲와 綠絲를 둘러 臣下들의 신분을 구분했다.[27]

"陰陽絲笠은 양태에 총모자를 얹어서 촉사를 입힌 것으로 眞絲笠 다음가는 上品이다. 陰陽笠은 양태에는 布를 입히고 총모자에 촉사를 입힌 것이다. 布笠은 양태와 총모자에 布를 입힌 것으로 下品이며 馬尾笠은 馬尾로 만든 것이고 猪毛笠은 돼지털로 만든 것이다.[28]

다. 實 物

首都博物館에서 實測 해 놓은 것으로 舊韓末의 것으로 추정하는 12개의 갓을(表 4) 비교한 결과 양태의 지름이 제일 큰 갓이 37.5cm였고 제일 작은 갓이 25cm였으며 높이는 11cm가 제일 낮은 것이었고 14.5cm가 제일 높은 것이었다. 높이와 지름과의 비율은 갓의 높의 14.5cm 지름 28cm인 갓이 1:2로 제일 적었고 제일 큰 비율의 갖은 1:3인 높이 11.7cm 지름 37cm의 것이었다. 특이한 것은 紋樣이 있는 것이었는데 갓 전체에 파도紋이 있는 갓과 帽頂에 紋樣이 있는 갓이 있었다.

(表 4) **漆笠 實測表** 단위 cm

	높 이	지 름	높이와지름의비율(약)	비고
실물①	14.5	28.5	1 : 2	小
②	13	25	1 : 2	
③	11.5	26	1 : 2.2	
④	14.2	32	1 : 2.2	
⑤	13.5	30	1 : 2.2	
⑥	11.5	27.5	1 : 2.3	
⑦	12	29.2	1 : 2.4	
⑧	13	32	1 : 2.5	
⑨	11	28	1 : 2.5	
⑩	13.5	39	1 : 2.9	
⑪	12.5	37.5	1 : 3	
⑫	11.7	37	1 : 3.2	大

<수도박물관 소장품>

라. 笠 纓

笠纓은 갓끈이라고도 하며 턱 밑에서 매어 갓을 고정시키는 것인데 官等과 身分에 따라 笠纓의 종류가 달랐다. 官職者는 玉石 등의 귀중품을 一般庶人층은 布纓(비단 끈)을 사용했는데 차츰 사치해져서 맨다는 目的보다 장식적인 면에 치우쳐 나라에서 禁制令도 여러번 내렸다.

高宗이 王位에 오르자 大院君은 "긴 갓끈을 짧게 고치게 했고[29] 高宗 21년 6月에 定한 私服變制節目에서 "갓끈은 좁은 織組나 紗나 帛이나 珠를 사용하되 매어 늘어뜨린 길이가 길지 않게 하라고 했다.[30]

笠纓의 종류에는 木纓 竹纓 烏竹纓 珊瑚纓 蜜花纓 水晶纓 象牙纓 琥珀纓 瑪瑙纓 玳瑁纓 布纓 등이 있다.[31] 實物은 각 博物館에 많았는데 首都박물관에 玳瑁纓 象牙纓 금파纓 黃玉纓 등 좋은 것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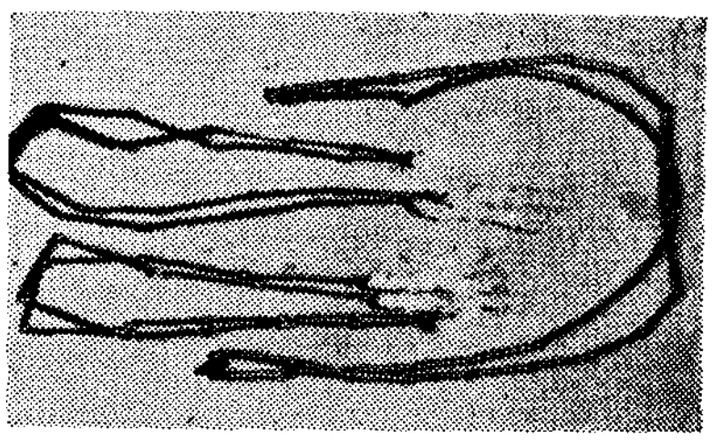

<圖 14 竹纓 석주선 한국복식사>

2. 周衣(두루마기)

"두루마기는 兩脇下가 터져 三幅이 따라 도는 小氅衣에 대해 휘돌아서 다 막힌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병 후리매라고도 하는데 휘둘러 맨다는 뜻이다. 두루마기와 小氅衣는 똑같이 소매 좁은 옷인데 옆구리를 튼 것과 트지 않은 차이이니 필시 창옷으로부터 周衣 順으로 발달된 듯하다. 周衣는 道袍의 밑 옷이었는데 집에서도 두루마기를 입는 것이 예의이며 외출시에 그 위에다 道袍를 입었다. 道袍를 착용 못하는 常民階級에서는 周衣가 웃옷이 되었다. 鶴岡散筆에 의하면 白氅衣의 禁令이 난 뒤에 朝士의 有服者가 新制의 中衣를 만들고 그 色을 白色으로 한

27) 한국의 관모, p.51.
28) 芮庸海 "笠子匠" 文化財(서울, 대한공론사, 1965) p.110.
29) 李瑄根 韓國史 最近世篇 p.221.
30) 高宗實錄 卷 21, 고종 21년 6월, 49面.
31) 石宙善 韓國服飾史(서울, 1971) p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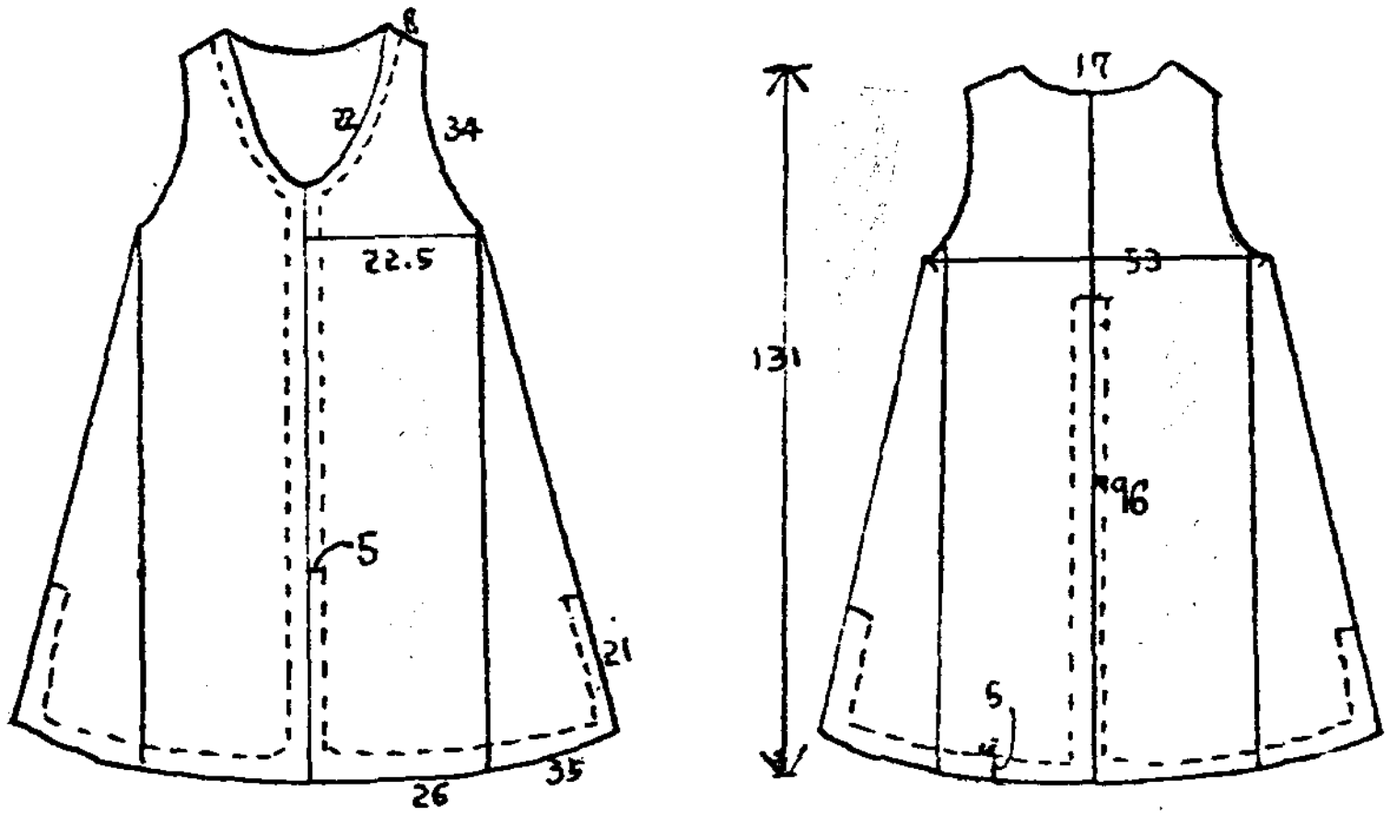

<圖 15 전복前後 이대소장>

것이 周衣의 始라 했다.[32]

道袍의 밑옷이고 常民의 웃옷인 周衣가 高宗 21년 5月 甲申衣服 改革때는 양반의 私服이 되었은즉 "私服은 貴賤을 막론하고 窄袖衣(周衣)로 하며 廣窄인 道袍 直領 氅衣 中衣는 지금 이후부터 없애며 有官者는 戰服을 加하고 窄袖衣에 혹 緣을 加할 때는 他色으로 하되 넓이가 布帛尺으로 1寸으로 하라고 했다.[33] 그러나 갑자기 시행된 의복개혁은 국민에게 납득이 되지 않어 맹렬한 반대에 부딪쳤으나 10년후의 사람들은 周衣를 입어 부끄러워 하지 않았으니 時俗의 변이라고 黃玹은 梅泉野錄에서 말했다.

고종 31년(1894) 12月에는 "黑色 周衣에 搭護를 加하여 進宮 通常禮服으로 입으라 했으며[34] 이듬해" 3月에는 官民이 同一한 衣制인 黑色 周衣를 착용하라 했는데[35] 그 이유는 官과 民에 區別이 없고 같다는 뜻임을 內部告示로써 밝혔다.[36]

8月 10日 頒布된 文官服에서는 "周衣가 常服으로 되었으나 進見時에는 못입고 內外官 仕進時에만 착용할 수 있었으니[37] 常服이란 單語의 槪念이 달라진 것이다. 두루마기(周衣)의 形態는 현재 착용되고 있는 것과 같다.

3. 搭護(褡護)=戰服

원래 褡護와 戰服은 달랐는데 언제부터인지 같은 것으로 되어 고종 21년 甲申衣色 改革때官者의 私服은 周衣에 戰服을 加하도록 할 때도 褡護와 戰服이 같은 것으로 사용되었다. "直請金榮善의 상소에 戰服을 입으라 하고 褡護令을 내림은 不可한 즉 褡護와 戰服은 그 制度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38]라 했은즉 戰服令을 내려야 한다는 뜻인데 답호와 전복의 制度와 개념이 같아진 후였으므로 戰服을 입으라 하고 搭護令을 내린 것이다.

고종 31년 6月에는 다시 燕居 私服에 周衣 搭護를 착용토록 했고 12月에는 朝臣의 進宮 通常禮服으로 周衣 搭護를 입게 했다가 32년 3月에는 搭護를 除했다가 8月에 또다시 文官의 常服이 周衣 搭護 絲帶로 되었다.

※ 형태와 재료

褡護 즉 戰服은 快子라고도 하며 소매없는 윗옷으로(도 15) 具軍服인 동다리 위에 입을 때는 戰帶를 매고 周衣 위에 입을 때는 絲帶를 맨다. 材料는 실물인 鄭元容(1783~1819)의 홑과 겹 戰服은 甲紗이고 梨大 家政大 所藏인 홑 戰服은 북청색 생수였고 金炳冀의 홑 戰服은 옥색 번사였다.

4. 紗 帶

絲帶는 條兒(條兒)라고도 하며 主로 鄕吏 書史 別監 皂隷 등 낮은 官吏들과 儒生들이 사용했는데 大典會通에 이르러 一.二.三品의 私服에

32) 崔南善, 朝鮮常識 風俗篇 p.120.
33) ① 高宗實錄 21, 高宗 21年 6月. 49面.
② 承政院日記, 高宗 21年 6月 3日.
③ 日省錄, 高宗 21年 6 3月.
34) 高宗實錄 卷 32, 고종 31년 12월. 70面.
35) 高宗時代史 卷 3, 고종 32년 3월 29일.
36) 高宗時代史 卷 3, 고종 32년 4월 5일.
37) 大韓季年史 卷 2, 고종 32년 8월 10일.
38) 高宗實錄 卷 25, 52~53面.

(표 5) **戰服=褡護 實測表**

색과 재료	착 용 자	길이	품	깃	진동	무	고대	어깨넓이	arm-hole	옆트기	뒤트기	안단
黑紅양태문갑사	정원용전복(겹)	127	48	30	30	41	16	8.5	30×2	26	93	3.3
靑 〃	〃 (홑)	114	45	22	30	33	17		30×2	20	85	5.5
북청색생수	이대소장전복(홑)	131	53	22	34	36	17	8	34×2	21	96	5
옥색번사	김병기전복(홑)	125	44	28	30	35	17			24	35	6

紅條兒가 着用되었다.

高宗 21년 5月 "私服은 便에의해 周衣 戰服絲帶로 하라는 命에 따라 6月에 私服變制節目을 定했는데 帶는 廣帶를 사용하되 묶은 후 내려뜨린 길이가 周尺으로 1尺을 넘지 못하며 혹 絲帶를 사용할 때도 아래로 늘어뜨린 길이가 周尺으로 1尺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도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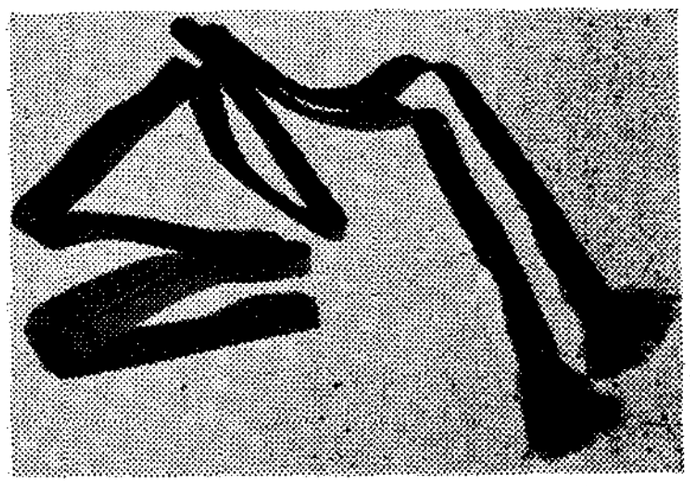

<圖 16 廣帶 박수자선생님제공>

文武堂上官의 帶는 紅紫色이고 堂下官은 靑綠色이며 儒生은 革帶를 사용하라했다.[39] 高宗 32년 8月에는 文官服인 常服에 착용되는 絲帶로 昇格했다.

※ **種類와 形態**

<圖 17 絲 帶>

(도 17)

1) 끈이 球形이면서 술이 2가닥인 것 길이 365cm 술길이 9cm 색은 紫色 白 紅 紫朱 赤等.
2) 끈이 球形이면서 술이 4가닥인 것 길이 370cm 술길이 11cm, 色은 紫朱 꽃분홍 紫色 등.
3) 끈이 평면이면서 풀어진 술(圖 16). 길이 350cm 넓이 2.2cm 술길이 8cm, 色은 綠 褐 紫朱 紅 등.
4) 끈이 평면이면서 술이 4가닥인 것 길이 338cm 넓이 6cm 술길이 12cm, 色은 연두 紫朱 紫 紅등.[40]

Ⅳ. 大韓帝國 時代의 文官服

광무 4년(1900) 4月 17日 勅令 제14호로 文官服裝規則이 頒布됨으로 해서 신라 진덕여왕 이래 착용했던 中國式 官服이 歐美式으로 되었다. 武官과 警官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文官服裝은 大禮服 小禮服 常禮 3종이다.

大禮服의 制式과 그림이 자세히 法規類編二 規制 門제十類 衣制에 있어 그대로 옮겼고 실물은 고대 박물관에 上衣 1점이 있는데 불란서 제품이었다.

小禮服은 1900년대의 歐美의 禮服인 frock coat와 燕尾服 이고 常服은 당시의 平服인데 그 制式에 대한 언급은 없고 構成과 着用者 및 着用時期에 대해서만 있어서 1900년대의 歐美服飾과 당시 우리나라에서 착용했던 사진을 비교했다.

A. 大禮服

1. 유럽 諸國의 大禮服

"大禮服은 國王의 宮廷이나 대통령의 公邸에서 公式으로 定한 때에 입는 儀禮用의 服裝으로 불란서 스페인 폴튜갈 남아메리카제국 이란 태국 중국 등에는 金모르로 수놓은 燕尾形의 大禮服이 제정되어 있다.

이런 형식의 옷은 18C~19C 宮廷행사가 화려했던 유럽에서 貴族의 禮服의 특징인 장식적인 면이 그대로 습용되었다. 진紅色의 上衣도 있지만 대부분 짙은 紺色이나 黑色羅紗를 썼으며 袖口에는 비로드를 붙였다. 胸部 깃 袖口 등에 樫, 月桂樹 花葉을 金銀絲로 繡 놓았다.

모자는 타조 등의 장식털을 붙인 山形이고 佩

39) 高宗實錄 卷 21, 고종 21년 6월, 49面.
40) 朴秀子 "帶의 變遷에 관한 小考" 家政 15號 이대가정학회 p.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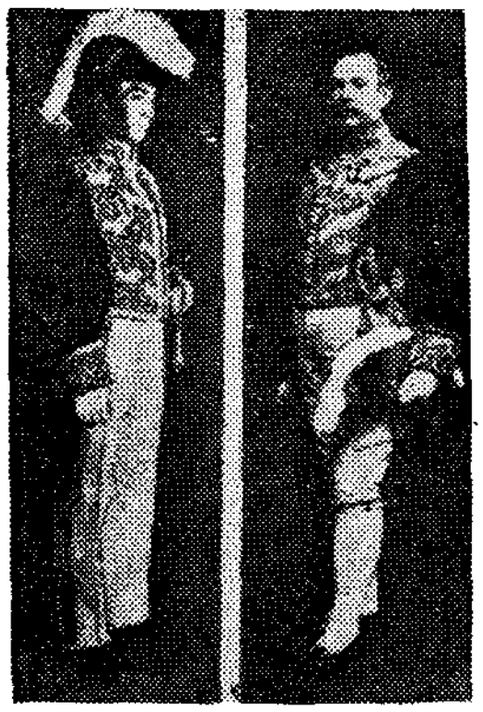

<圖 18 左 日本의 大禮服 右 英國의 大禮服>

劍 한다. 英國에서는 coat를 입을 때는 白色 승마용 半바지(breech)에 白色 silk 양말을 착용하며 Levée 때는 짙은 紺色 바지로 규정되어 있다(도 18).

日本은 1872년 英國 런던에다 주문하여 法令으로 文官大禮服을 정했고(도 18) 1884년 러시아 官廷의 것을 모방한 frock-coat 형의 宮內官 大禮服을 정했다가 燕尾服형으로 고쳤고 終戰後 폐지되었다. 現在는 燕尾服을 이것 대신으로 입는다.[41]

2. 우리나라의 大禮服

가. 着用하는 때

陣賀時 動賀動輿時 因公階見時 宮中陪食時에 착용하며 親, 勅, 奏任官이 착용하는데 大禮服이 未備한 官員은 小禮服인 frock coat로 대신할 수 있었다.

나. 構 成

광무 4년 4月 17日 칙령 제15호로 大禮服裝式을 定했고 광무 10년 12月 12日 칙령 75호로 개정했는데 上衣만 개정되었으며 文官職에 광무 4년에는 勅任官과 奏任官 判任官이 있었는데 광무 10년에는 親任官이 더 생겼다. 大禮服은 帽 衣 胴衣 袴 鞋 劍 勳章으로 구성된다.

(1) 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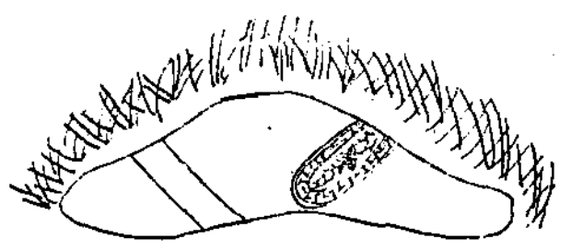

<圖 19 帽>

가) 帽의 地質과 式樣(도 19). 地質은 黑毛 天鵝絨이고 모양은 앞 뒤가 뾰족나온 山形인데 長은 1尺 5寸, 高는 4寸 5分이며 머리 모양에 따라 치수를 加減한다. 頂端에 飾毛는 親, 勅任官은 白色이고 奏任官은 黑色이다.

나) 帽의 側章(圖 20.21)

槿花 一枝를 정면으로 付하고 줄기 쪽에 직경 7分인 金製 槿花단추 1개를 付했다. 沿邊에는 넓이 3分인 金線을 둘렀는데 親, 勅任官은 凸凹紋이고 奏任官은 無紋이다.

(2) 衣(上衣)

가) 上衣地質

深黑紺色 羅羅紗

나) 衣領章(도22)

공무 4년의 衣領章 地質은 軟靑色羅紗였고 橫紋金線 二條를 付하고 그 內에 槿花 2枝를 金繡하였고 勅·奏任官이 같았다. 광무 6년의 衣領章은 袖章의 地質과 같았은즉 親任官은 紫色 勅任官은 靑天色 奏任官은 黑紺色의 羅紗이다. 橫紋分線 一條를 둘렀고 前面 左右와 뒤쪽에 金絲로 繡놓았는데 親·勅任官은 小槿花 一枝씩 奏任官은 槿葉만 金繡했다.

<圖 20 親勅任官 側章>

<圖 21 奏任官側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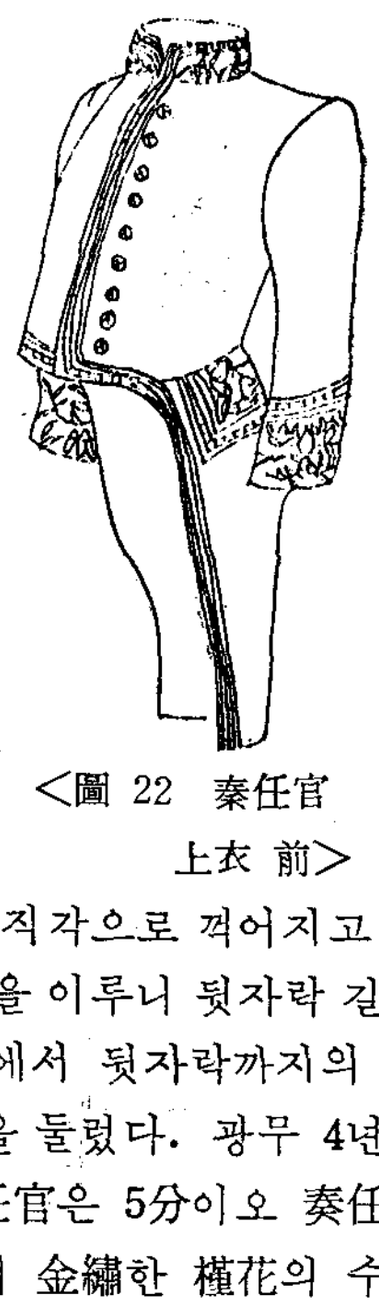

<圖 22 奏任官 上衣 前>

다) 前面(도 22 참조)

前面은 立襟이고 직경이 7分인 金製槿花 단추 9개를 달았고 立襟은 小腹下까지 와서 左右로 腿骨까지 직각으로 꺾어지고 다시 사선으로 내려가 뒷자락을 이루니 뒷자락 길이는 무릎뒤까지 왔다. 衣領에서 뒷자락까지의 邊은 넓이 5分되는 橫紋金線을 둘렀다. 광무 4년에는 橫紋金線의 넓이가 勅任官은 5分이오 奏任官은 4分이었다. 가슴부분에 金繡한 槿花의 수로 勅任官의 등급을 나누었고 奏任官은 없었는데 광무 10년에는 親·勅·奏任官 전부 金繡가 없다.

라) 後面(圖 23)

後面表章은 다음과 같다. 허리선 아래 양끝에 있는 橫紋金線 두른 4각형의 地質은 袖章과 同一하고 뒷자락 中央線에 橫紋金線을 付했고 뒷자락의 金線을 中心하여 左右에 각각 직경 7分인 金製 槿花 단추 1개씩을 허리선上에 달았다. 親·勅任官은 金線두른 4각형 內와 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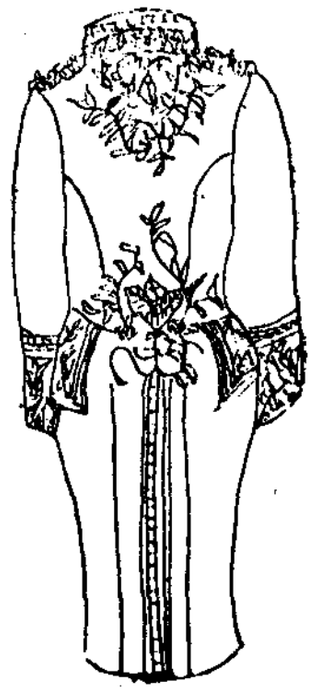

<圖 23 親任官上衣後>

41) 被服文化協會編 服飾大百科事典 上(東京소화 44년) p.625.

部上下에 槿花 一枝를 金絲로 繡놓았고 奏任官은 槿花만 金繡했다. 광무 4년에는 4각형 內에 全槿花 2枝를 親·奏任官이 同一하게 金繡했고 勅任官은 脊部에 全槿花 一枝를 金繡했다.

마) 袖 章

광무 4년에는 袖章은 軟靑色 羅紗로 勅·奏任官이 同一했다. 광무 6년에는 袖章의 地質은 親任官은 紫色이고 勅任官은 靑天色이며 奏任官은 黑紺色 羅紗다. 袖口로부터 3寸 떨어져서 橫紋金線 一條를 둘렀고 그 안 左右 半面에 親, 勅任官은 槿花 一枝를 奏任官 槿葉만 金繡했다.

바) 肩 章

광무 4년에는 肩章이 없었는데 광무 6년에는 親任官만 左右 肩章에 槿花 3枝를 각각 金繡했다.

<圖 24 조끼>

(3) 胴 衣

下衣 혹은 조끼라고도 한다. 胴衣의 地質은 深黑紺色 羅紗로 上衣와 같고 직경 5分인 金製단추 5개를 달았고 단추와 단추 사이는 2寸이며 親·勅·奏任官이 同一했다. (圖 24)

<圖 25 袴>

<圖 26 親勅任>

<圖 27 奏任用>

(4) 袴(圖 34)

地質은 上衣와 같고 左右 側面에 넓이 1寸인 金線을 付했는데 親·勅任官은 兩條 凸凹紋(圖 26)이고 奏任官은 單條 凸凹紋이다(圖 27).

(5) 劍

가) 劍 章

劍章은 長이 2尺六寸 5分이고 柄은 親·勅任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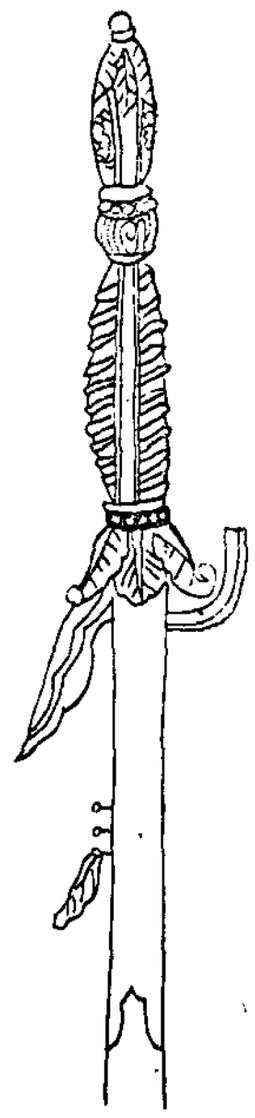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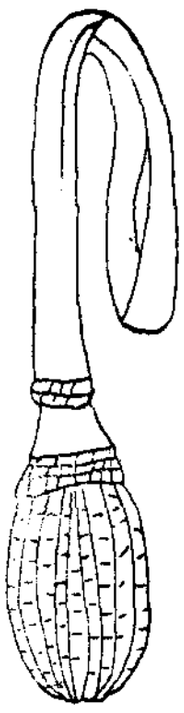

<圖 29 劍下粧> <圖 30 劍緒>

<圖 28 劍側面>

은 白皮며 奏任官은 黑皮로 하되 金線을 螺纏하니 長이 4寸 5分이고 鯉口가 2寸 6分이고 鐺이 5寸이다. 柄頭는 弓形이고 環鞓鐺鞘 上에 親·勅任官은 槿花를 조각한다. 奏任官은 조각하지 않는다.

나) 劍 緒

劍緒는 親, 勅任官은 純金絲고 奏任官은 金銀絲로 한다.

다) 紐 帶

親·勅任官은 金織이고 奏任官은 銀織이다.

이상은 1900년에 제정된 것과 1906년에 改定된 大禮服 製式인데 1900년代의 옷을 갖고 있는 사람은 1906년 이후에도 계속 착용하도록 제14조에서 밝혔다.[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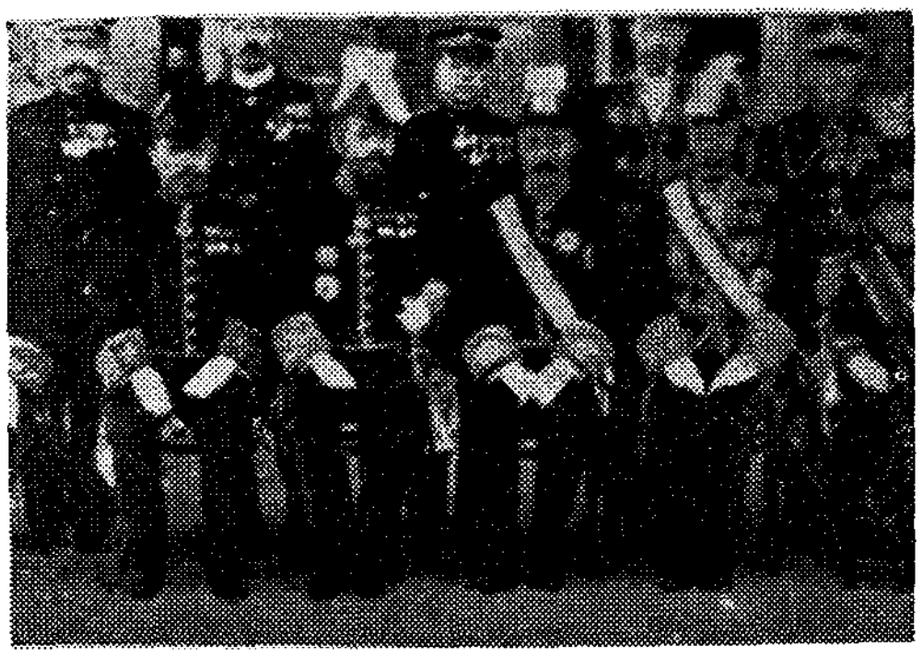

<圖 31 大禮服 李康七선생님 제공>

3. 着用 實例

圖 31은 영친왕이 11才(1907) 때 日本 宮中修

42) 法規類編, p. 311~325.

學院에 수학하러 갔을 때의 것으로 右측에서 1번은 영친왕 2번은 1900년에 制定된 勅任官의 옷을 입은 이원용인데 할영 당시는 親任官이었을 것이고 3번은 송 병준으로 1906년에 改定된 親任官의 服裝이고(肩章이있다) 4번은 勅任官의 服裝이고 5번은 奏任官의 服裝이다(帽子의 장식털이 黑色이다).

(6) 勳 章

高宗 37년(1900) 4月 17日 "勅令 제13號로 金尺大勳章 李花大勳章 太極章紫鷹章이 制定되었고[43] 高宗 38年 4月 16日 "勅令 제10호로 八卦章이 太極章과 같은 格으로 追加되었으며 39년에는 端星大勳章이 李花大勳章 위에 添入되고 44년(1907) 3月 30日을 期하여 勅令 제20호로 皇后가 內外命婦에게 授與하는 瑞鳳章등 7개를 制定하기에 이르렀다[44]

가. 勳位 勳等[45]

勳位 勳等은 功績과 功勞가 있는 사람을 賞하기 위해 設定했는데 階級과 勳等에 따라 各種 勳章을 佩用하게 했고 勳等은 大勳位, 勳, 功三種으로 정하며 勳과 功은 각기 1~8등으로 나누었다.

나. 勳章의 種類 및 授與 對象範圍[46]

(1) 金尺大勳章…無等級으로 瑞星大勳章 위에 있고 皇室에서만 佩用하고 皇親 및 文武官中 瑞星大勳章을 받은 者에게 特別 勳勞가 있을 때 特旨로 叙賜한다.
(2) 瑞星大勳章…無等級으로 李花大勳章 위에 있고 皇室에서만 佩用하고 皇親 및 文武官中 李花大勳章을 받은 者에게 特別 勳勞가 있을 때 特旨로 叙賜한다.
(3) 李花大勳章…無等級으로 太極章의 위에 있고 文武官中 太極 一等을 받은 者가 特別 勳勞가 있을 때 特旨로 叙賜한다.
(4) 太極章…一等章에서 八等章까지 있으며 文武官中 勳等에 따라 授與한다.
(5) 八卦章…太極章과 같다.
(6) 紫鷹章…武功이 拔群한 者에게 그 功等에 따라 叙賜한다.
(7) 瑞鳳章…內外命婦中 淑德과 勳勞가 特別하면 皇后徽旨를 經由한 後 勳等에 의하여 叙賜하며 一等章에서 6等章까지 있다.

다. 勳章의 形態

각종 훈장. 製式에 대해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으며[47] 實物인 圖32를 설명하면 勳三等八卦章兼二等副章으로 章은 金銀質에 徑이 1.8이고 八卦는 紅色 光線은 靑色이다. 環은 金質이고 楕圓이다. 綬는 廣이 1寸에 淡靑質紅線織인데 喉下에 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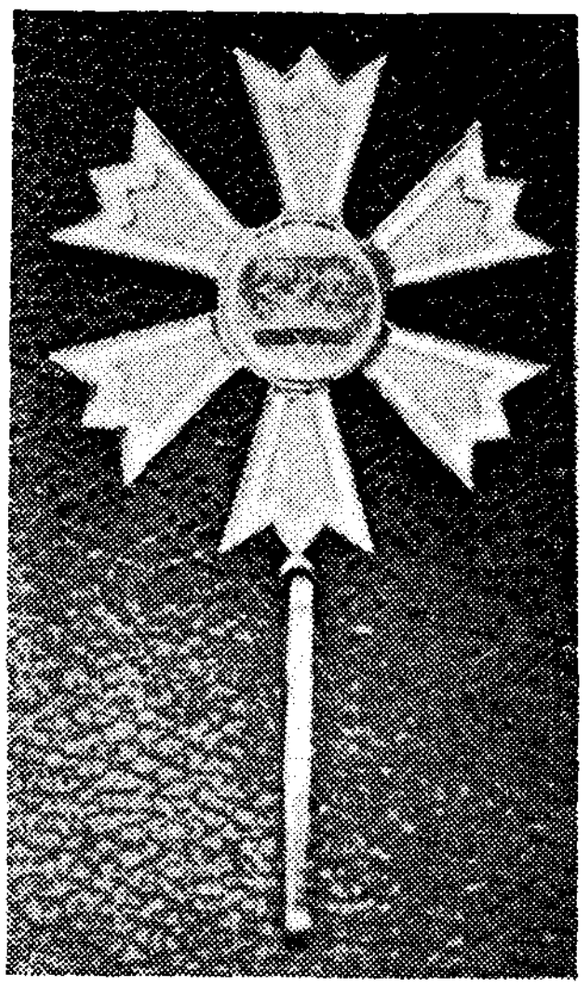

<圖 32 勳三等 兼二等 副章, 八卦章> (李康七所藏)

훈장은 목 아래에 다는 것, 가슴의 左와 右에 다는 것, 왼쪽에서 오른쪽 脇에 두르는 것,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脇에 두르는것 등 勳章에 따라 그 佩用法이 다르다.

B. 小禮服

小禮服에는 歐制 燕尾服과 厚錄高套의 2種이 있었고 親·勅奏判任官이 通共 착용하였다.

연미복인 경우는 眞絲高帽 下衣(胸部濶開制) 袴(上衣同色地質) 鞋(漆色皮制)로 구성되고 厚錄高套인 경우는 眞絲高帽 下衣(胸部稍陜制) 袴(上衣異色地質) 鞋(漆色皮制)로 구성된다.

1. 유럽 請國의 frock coat

<圖 33 frock coat>

frock coat는 "낮의 남자의 정식 禮服이다(圖 33). 1870~1900년대에 business wear로 일반적이던 frock coat가 정식 예복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prince albert라고도 하는데 1876년 英國 빅토리아 女王의 사위인 prince a[bert가 미국 방문 때 double의 frock coat를 입어 미국에서 유

43) 高宗時代史 卷 5 p.60.
44) 李康七 "甲午改革以後의 勳章制度에 對하여" 古文化第七輯 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69. 12. p.3.
45) 高宗時代史 卷5 p60~63.
46) 바로 앞, 책 p.60~63.
47) 李康七 甲午改革以後의 勳章制度에 對하여 p.6~9 참조.

행이 되어서 붙여진 것이라 한다."[48]

frock coat의 上衣의 앞에 단추 3개를 붙인 single도 있는데 이것은 현재 특수한 경우에 쓰이며 보통은 上衣의 앞에 double로 4~6개의 단추가 있고 길이는 무릎까지이고 lapel(접은 깃)에 silk를 붙였다.

옷감은 黑이나 회색의 옥스퍼드, worsted였다

조끼는 上衣와 같은 색의 옷감이나 혹은 엷은 색이 쓰였고 single, double collar가 있는 것도 있었는데 single이 유행했다.

바지는 黑色, 灰色의 줄이 좁게 세로로 있는 것이나 格子 무늬의 것이 있었고 바지줄이 예리하게 섰다.

neck tie는 灰色, 黑色, 無地 silk나 줄무늬의 것으로 리본형이나 매듭짓는 형이 있어 취미에 따랐으나 정장인 경우 黑色이 원칙이었다. tiepin도 사용했다.

샤쓰는 白色이며 앞에 주름잡힌 것이 우세했다.

깃은 wing collar나 빳빳하게 세워진 흰 깃이 유행했다.

구두는 부드러운 가죽단화였고 장갑은 회색 쎄무(chamois)나 사슴가죽이나 흰 장갑이 있었다. 양말은 검정이었다.

over cost는 frock over coat를 입었다.

모자는 높았고(top hat) 검정 silk hat이나 灰色 silk hat이 유행되었다.[49]

2. 우리나라의 小禮服인 厚錄高套(forck coat)

<圖 34 frock coat 이강칠제공>

厚錄高套는 宮內進見時 各國 慶節 賀禮時 私相禮訪時에 착용했다.

가. 眞絲高帽

歐制 silk Top hat을 말하며 1896년 1月 冠은 本國産物料로 外國式樣을 參用하라는 命과 함께 모양은 silk hat과 같이 하고 笠中 最高品인 眞絲笠의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 眞絲高帽라 한 것 같다.

나. 下 衣

조끼 혹은 胴衣라고도 하는데 胸部稍陝制 즉 下衣 앞이 적게 파진 것을 의미한다.

다. 袴

上衣와 異色 地質로 하라 했다. 圖 34에 의하면 세로의 좁은줄 무늬가 보인다.

라. 鞋

漆色皮制 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도 34로 보아 검정색 가죽구두임을 알 수 있다.

3. 유럽 諸國의 燕尾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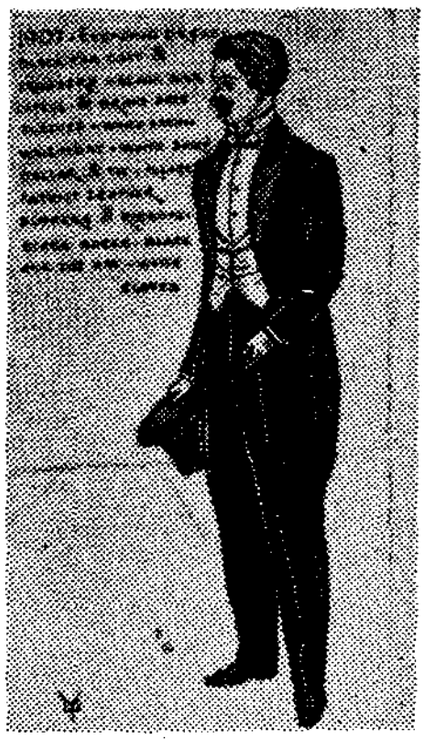

<圖 35 연미복>

燕尾服은 tail coat, morning coat라고도 하며 처음에는 男子의 日常服이더니 1900년경에는 frock coat의 略禮裝으로 혹은 晝의 정식 禮服으로 착용되었다. 미국에서는 cut away 혹은 cut away frock(frok coat의 앞자락이 변해서 mornig coat가 되었다고 붙인 이름이라고 하는데 용도나 design에 따라 종류가 많다.[50]

上衣의 옷감은 黑色 無地의 토스킹 카시미어가 쓰여지고 접는 깃(lapel)이며 single이고 허리선이 짤라진 것이 보이고 앞자락이 사선으로 재단되었다.

뒷자락은 燕尾狀으로 되었는데 waist line의 中心부터 아래로 갈라졌으며 길이는 무릎 뒤까지 왔다.

조끼는 上衣와 같은 감이거나 회색 淡黃茶色이고 形은 single로 5~6개의 단추가 있고 double도 있다.

바지는 黑色이나 쥐색의 아래로 줄쳐진 것, 格子무늬가 있어 보통은 上衣와 異色으로 입었지만 같게도 맞추어 입었다. 모자 샤쓰 타이 양말 구두 장갑은 frock cost 때와 같다.[51]

4. 우리나라의 小禮服인 燕尾服

燕尾服은 各國使臣召接時 宮中賜宴時 內外國官人晩餐時에 착용한다.

---

48) 被服文化協會編, 服大百科事典下 p.255.
49) Doreen Yarwood *English Castume* London; B. T. Bafsford p.250~254.
5)) 服飾大百科事典 下 p.436.
51) English Costume p.244.

가. 眞紗高帽

silk top hat으로 厚錄高套 때와 같다.

나. 下 衣

胸部濶開制 즉 조끼 앞이 많이 파진 것을 말한다. 高宗의 연미복 차림(도 36)을 보면 조끼 앞이 많이 파졌다.

<圖 36 高宗의 연미복>

다. 袴

上衣와 同色 地質을 착용토록 했다.

라. 鞋

漆色 皮制 즉 검정 가죽 구두임을 도 36으로 알수 있다. 단 禮式院 官員이 宮中에서 禮式으로 進參한 때는 金鈕를 特用토록 했다.

C. 常 服

常服은 仕進時 執務時 燕居時에 착용하며 歐制平帽 歐制短後衣 下衣 袴 純色鞋로 구성된다.

1. 유럽 諸國의 平服

"1850년 이후에 생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평상복인데 이 옷이 생긴 이래로 紳士服의 流行의 中心地는 毛織物의 世界的 生産國인 英國이 되었다.

英國에서는 한가한 편안한 옷이라는 뜻의 lounge jacket 美國에서는 통자루라는 뜻인 sack coat라 불렀다. 日本에서는 背廣服, 세비로라고 하는데 세비로라는 말은 官服에 對해 시민복(civil wear)이라는 뜻에서 나왔다는 설과 英國의 고급 양복점이 많이 모여 있는 Savile Row의 거리各에서 나온 말이라는 설이 있다.

背廣服이란(圖 37) 背部가 燕尾服에 비해 넓다는 뜻이니 즉 세비로는 2조각의 넓은 천으로 등 중심을 1번 꼬맨 넓은 옷인데 연미복은 3~4 조각의 좁게 재단된 천으로 등 중심에 한선, side body 2선, 합 3선의 꼬맨 줄이 보이는 좁은 옷이다.[52]

<圖 37 중절모자>

"옷감은 worsted, 옥스퍼드 등의 것으로 袴와 上衣는 同色地質이 많이 사용되었다. 모자는 회색 felt로 만든 중절모자에 검정선 (Band)을 둘러 ribbon을 매었다.

흰 collar에 bowtie나 매듭짓는 tie를 매었다.

2. 우리나라의 常服

가. 歐制平帽

우리나라에서는 중절모자 혹은 中山帽子라고도 한다.

나. 歐制短後衣

厚錄高套나 燕尾服의 뒷자락이 무릎뒤까지 온 것에 비해 짧기 때문에 短後衣라 한것 같다.

다. 下衣는 조끼를 말한다.

라. 袴

보통 上衣와 同色 地質을 사용했다. 圖 39는 甲申改革때 주동인물의 하나였던 徐光範의 당시 歐美式의 平服 차림이다.

<圖 38 sack coat 日本服飾大百科 사전에서>

<圖 39 徐光範의 平服>

맺 음 말

文官服은 1884년부터 간소화 되더니 1895년 8月에 文官服이 大禮服 小禮服 常服으로 반포되었다. 이때의 단령色은 흑단령이 되었고 소매넓이로 大禮服 小禮服을 區別했고 周衣 褡護 木靴로 常服이 되어 이 차림으로는 進見할 수 없게 되니 단어의 개념이 바뀌게 된다.

실물을 실측한 결과 1895년 이전의 常服의 소매넓이는 50~58cm였고 1895년 이후의 大禮服은 40~48cm, 소례복은 23.5~32cm였다.

1900년에는 西洋式 文官服이 반포되어 신라 진덕여왕 이래 중국식 文官服과의 2중 구조가 서양식과의 2중 구조로 바뀌게 된다.

52) 服飾大百科事典 上 p. 572.
53) English Costume p. 248, p. 252.

참 고 문 헌

① 李康七編, 韓國名人肖像大鑑, 서울 探求堂 1973.
② 李光麟, 韓國開化史研究, 서울 일조각 1969.
③ 李圭泰, 開化百景 卷四, 서울 新太陽社 1969.
④ 重要民俗資料解說, 文化財管理局 1973.
⑤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臺北 中華大典編印會, 中華民國 56년.
⑥ 三才圖會 卷四, 臺北 成文出版社 影印本.
⑦ 坂貞雄, 朝鮮外交秘話, 京城 소화 9년(1934).
⑧ 朝鮮總督府, 李朝實錄風俗關係資料撮要, 京城 소화 14년(1939).

※ 이논문은 1974학년도 5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2/3로 요약한 것임.

＜韓國服飾學會, 服飾 創刊號, 1877. 2. 28＞